

# 외국인을 위한 법인설립 안내

外国人のための法人設立ガイドブック

2006. 1

**Invest KOREA**

- 본 책자는 외국인의 국내 법인설립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국인투자 지원센터(Invest KOREA)의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법률 용어의 엄격한 사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실제 업무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책자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Invest KOREA 종합행정지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pyright 2004 대한민국 Invest KOREA가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9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Invest KOREA 종합행정지원실(☎137-749)
- 전화 : 82-2-3460-7545
- 팩스 : 82-2-3460-7946/7947
- 홈페이지: [www.investkorea.org](http://www.investkorea.org)

# 목 차

<b>I.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b> .....	<b>1</b>
1. 현지법인 .....	2
2. 개인사업자 .....	2
3. 지 점 .....	3
4. 연락사무소 .....	4
<b>II. 현지법인설립절차</b> .....	<b>5</b>
1. 현지법인설립 흐름도 .....	5
2. 외국인투자신고 .....	5
3. 외국인투자자금 송금 .....	6
4. 회사설립의 등기 .....	7
5. 사업자등록 .....	7
6.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	7
7.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7
<b>III. 회사설립등기절차</b> .....	<b>9</b>
1. 회사설립의 형태 .....	9
2. 주식회사 설립절차 .....	9
3. 주식회사 설립등기 .....	10

<b>IV.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b> .....	<b>16</b>
1.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 .....	16
2.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 .....	17
<b>V. 개인사업자 등록절차</b> .....	<b>18</b>
1. 등록절차 흐름도 .....	18
2. 외국인투자신고 .....	18
3. 투자자금 송금 .....	18
4. 사업자등록 .....	19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19
<b>VI.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절차</b> .....	<b>20</b>
1. 국내지사설치 흐름도 .....	20
2. 지사의 구분 .....	20
3. 설치신고 .....	21
4. 지점설치의 등기 .....	22
5. 폐쇄 및 청산대금의 회수 .....	24
■ < 별첨 > 법인설립 및 등기에 필요한 양식(견본) .....	25

## I.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 즉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현지법인 설립 또는 개인사업자를 통한 진출과, 외국환거래법의 절차에 의한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를 통한 진출 등임. 단, 연락사무소 설치의 경우는 국내 소득이 발생되지 않을 경우에 한함

외국인의 국내사업 진출방법



※ 외국법인에 의한 국내 개인사업자등록은 불가능함

## 1. 현지법인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의 국내 현지법인 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취급되며, 5,000만원 이상 투자하여야 함

## 2.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도 5,000만원 이상의 투자일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자로 인정되며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현지법인과 차이가 없으나 현지법인에 비해 개업과 휴·폐업이 간편하고 사회적 책임 등이 적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대외 신용도가 낮아 자금조달 및 우수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영세규모의 사업에 주로 적용됨

###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차이

구 분	개인사업자	법 인 (주식회사)
일반적 특징	1.기업이윤의 기업주 독점 2.기업설립이 용이 3.의사결정의 신속 4.기업주의 무한 책임 5.자본조달 능력의 한계	1.자본조달 및 형성이 용이 2.설립절차가 복잡 3.의사결정이 신속하지 않음 4.투자자본 범위 내에서 유한 책임 5.소유와 경영의 분리 가능
적정규모	소규모	중·대규모
법원등기여부	등기를 요하지 않음	등기를 요함
법적출자인원	대표자	발기인 1인 이상
출자금액	5,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상

### 3. 지 점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통상의 영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지점의 대표자를 임명하고, 외국환거래법상의 지점 설치절차를 밟아야 하며, 법원의 등기를 요함. 또한 지점은 세법상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며, 국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내국법인과 동일한 법인세율이 적용됨

####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지점의 차이

구 분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국내지점
근거법규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법인성격	내국법인	외국법인
동일체 여부	외국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이 별도의 인격체 (회계·결산이 독립적임)	본점과 지사가 동일인격체 (회계·결산이 동일체임)
신고수리,허가기관	Invest KOREA, KOTRA 국내·해외투자거점무역관, 외국환은행 본·지점	외국환은행지점(신고), 재경부(금융업 등의 허가)
최소(최대) 투자금액	최소 : 건당 5,000만원 최대 : 한도 없음	금액제한 없음
법인세율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 1억 이하 : 13%, 1억 초과 : 25%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 1억 이하 : 13%, 1억 초과 : 25% * 지점세 납부의무(프랑스, 호주, 캐나다 등)

※ 법인세율은 2005년 1. 1부터 13%, 25%가 적용됨(그 이전은 15%,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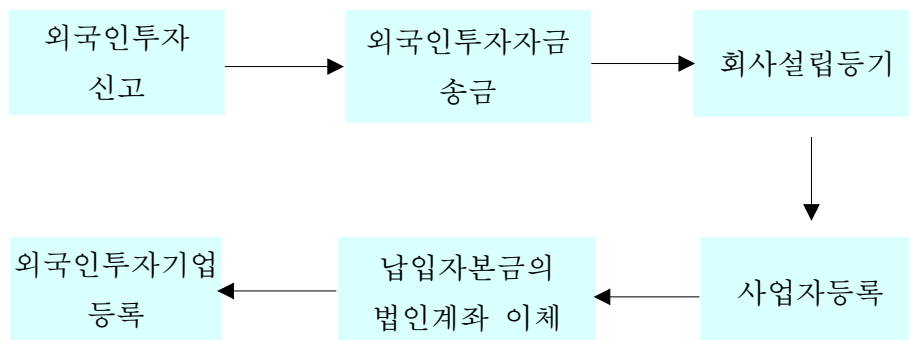
## 4. 연락사무소

지점과 연락사무소의 근본적인 차이는 지점이 영업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데 반해, 연락사무소는 단지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 활동(시장조사, 업무연락 등)만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임.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만 부여받게 되며 법원의 등기를 요하지 않음

## II. 현지법인설립절차

- 현지법인설립절차는 크게 3가지 단계로 구분됨  
즉, ①외국인투자신고절차, ②회사설립등기절차(개인사업자 등록절차), ③외국인  
투자기업등록절차임
- 내국인에 의한 법인설립절차와 비교할 때, 외국인의 경우 회사설립등기 전 외국인  
투자신고 및 회사설립등기 후 외국인투자기업등록만 추가될 뿐 나머지는 기본적  
으로 동일함

### 1. 현지법인설립 흐름도



### 2. 외국인투자신고

(1) 신고인: 투자가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투자가의 서명이 있는 위임장 첨부

(2) 신고장소: Invest KOREA, KOTRA 국내·해외투자거점무역관, 또는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국내은행 본·지점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3) 제출서류

-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별지 서식 1호) 신고서 2부
- 위임장(대리 신고인 경우)
- 외국인의 국적증명서(개인투자가는 여권사본)

(4) 처리기간 : 즉시

### 3. 외국인투자자금 송금

(1) 송금방법 : 송금 또는 세관 휴대반입

(2) 송금계좌

- 지정 외국환은행에서 부여하는 임시번호를 사용함
- 계좌번호가 없어도 수취인, 수취은행 정보만으로도 자금송금 및 수취가 가능함

#### 투자자금 송금전표 작성 예시

수취은행명 : ○○은행 △△지점

송금인명 : 투자가명

수 취 인 : 신설 또는 합작예정 회사명

자금용도 : ○○회사 설립 또는 투자자금이라고 명시함

(3) 송금후 환전하여 주금납입보관계정(유가증권청약증거금계정)에 예치

(4) 은행에서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하며, 이것은 회사설립등기시 필요한 서류임

- ※ 은행마다 차이가 있으나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발급을 위해 일반적으로 정관, 창립 총회의사록, 이사회이사록, 신주인수증 등의 공증된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사전 확인 요망

#### 4. 회사설립의 등기 : 회사설립등기절차(p.10)에서 상세히 설명

#### 5.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p.19)에서 상세히 설명

#### 6.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회사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신설회사는 법인격을 갖게 되며, 비로소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납입자본금은 신설법인 계좌로 이체됨

- ※ 납입자본금의 신설계좌 이체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에 사용할 도장(개인/법인), 대표이사 신분증 원본이 필요하며, 각 은행마다 요구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요망

#### 7.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1) 등록장소 :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
- (2) 등록기한 : 출자목적물 납입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3)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외화매입·예치증명서 사본 1부
- (4) 상기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즉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 발급되며, 이 등록증은 다음의 용도에 필요
  - 투자과실의 대외송금시

- ※ 참고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과 이사회결의서(배당내용 포함), 공인회계사 감사 필한 재무제표 등이 있으면 투자과실을 송금할 수 있어 일반적인 해외 송금절차에 비해 모든 절차가 매우 간편해짐
- 투자자의 장기체류비자(D-8) 신청시
  - ※ 투자자사증 신청
    - ① 신청장소 : Invest KOREA,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 해외 한국 영사관(중국인 제외)
      - Invest KOREA : 기업투자(D-8)자격으로의 체류자격 변경
      - 출입국관리소 :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 ② 구비서류 : 외국인투자신고필증사본,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여권, 사증발급 신청서 등

## III. 회사설립등기절차

- 상법상 가능한 회사형태는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 등 4가지이나, 주식회사 비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함
- 회사설립 등기는 본인이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 또는 Invest KOREA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 Invest KOREA에 의뢰할 때에는 본점이 서울에 있어야 하고, 등기당일 법인의 대표이사가 동행해야 함

### 1. 회사설립의 형태

- (1) 발기설립 :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인이 모두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
- (2) 모집설립 :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중에서 발기인은 일부만을 인수하고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여 설립하는 방법

### 2. 주식회사 설립절차

- (1) 발기인의 구성
- (2) 정관의 작성과 공증
- (3)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4) 발기인총회 및 의사록 작성
- (5) 발기인의 주식인수(발기설립), 발기인의 주식인수와 주주의 모집·배정(모집설립)
- (6) 현금(현물포함)출자의 이행
- (7) 이사 및 감사의 설립경과조사(발기설립의 경우 정관에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 또는 감정인의 설립경과조사 및 (발기설립

- 은 발기인에게, 모집설립은 창립총회에)보고
- (8) 창립총회의 개최(발기설립의 경우는 불필요)
  - (9) 이사회회의 개최
  - (10) 법인설립등기
  - (1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 3. 주식회사 설립등기

#### (1) 등기기간

- 가. 발기설립 : 설립경과의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 나. 모집설립 :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

#### (2) 등기전 주요 결정사항

##### 가. 발기인 구성

-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발기인 필요
- 발기인이란 정관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사람을 가리키며(상법 제289조), 외국인이나 한국 내 비거주자라도 발기인이 되는데는 제한이 없음
- 발기인은 서면에 의해 주식을 인수해야 하며, 따라서 발기인은 신설회사의 주주가 됨(상법 제293조)

##### 나. 유사상호의 검토

- 동일한 서울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타인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분할 수 없는 상호는 등기 불가(상법 제22조)
- 전국 소재 기존 기업의 상호는 대법원 웹사이트([www.scourt.go.kr](http://www.scourt.go.kr)) “법인등기 상호검색”에서 찾아 볼 수 있음. 보다 확실한 상호검색을 위해서는 서울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상호검색”을 신청할 수 있음

(3) 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

가. 등기에 필요한 서류 리스트

신 청 인 준 비 서 류	Invest KOREA 지원
1. 외국인투자신고필증 2. 위임장 ① 대표이사가 등기신청: 대표이사가 모든 위임장에 수임인이 되어야 함 ② 법무사가 등기신청: 발기인, 임원에 관계 없이 대리인이 수임인이 됨 3. 임원 취임승락서 ① 내국인: 인감날인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첨부 ② 외국인: 서명 및 주소증명서면의 공증된 원본, 여권사본 첨부 4. 주금납입보관증명서 5. 법인인감도장 6. 채권 7. 대법원 수입증지 8. 지방등록세, 교육세 납부영수증: 본점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 발급 후 은행 납부 9. 임원 및 발기인 각 개인 인감 (외국인 포함)	10.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11. 공증받을 서류: 정관, 창립총회의사록(창립 사항보고서, 조사보고서 포함), 이사회 의사록 12. 창립총회기간단축동의서 13. 주식발행사항동의서 14. 주식인수증 15. 주식청약서 16. 인감신고서 17. 주주명부

※ 각 서류에 대한 견본은 별첨 참조

나. 투자자가 해외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

- 해외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는 투자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다르며, 일본 투자자인 경우는 한국의 법인, 개인이 준비하는 서류와 동일함

### 개인투자자의 준비서류

위임장(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자/임원 등 서류에 이름이 기재되는 전원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일본인 : 위임장에 인감날인</li> <li>· 외국인 : 위임장에 서명후 공증</li> </ul> </li> </ul>
취임승낙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원으로 등재되는 전원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일본인 : 취임승낙서에 인감날인</li> <li>· 외국인 : 승낙서에 서명후 공증</li> </ul> </li> </ul>
인감증명서(2) 주민등록등본(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임장/취임승낙서에 첨부용으로 사용(한국/일본인에 한함)</li> <li>- 거주지에서 공증받은 주소증명서(2), 서명증명서(2)의 원본 (외국인)</li> </ul>
여권사본(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외국인</li> </ul>

### 법인투자자의 준비서류

위임장(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자/임원 등 서류에 이름이 기재되는 전원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일본인 : 위임장에 인감날인</li> <li>· 외국인 : 위임장에 서명 후 공증</li> </ul> </li> </ul>
취임승낙서(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원으로 등재되는 전원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일본인 : 취임승낙서에 인감날인</li> <li>· 외국인 : 승낙서에 서명 후 공증</li> </ul> </li> </ul>
인감증명서(2) 주민등록등본(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임장/취임승낙서에 첨부용으로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일본인 : 주민등록등본(2), 인감증명서(2)</li> <li>· 외국인 : 거주지에서 공증받은 주소증명서(2), 서명증명서(2)의 원본</li> </ul> </li> </ul>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위임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일본법인 : 위임장에 법인인감날인 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 통씩 첨부</li> <li>- 외국법인 : 외국투자법인 대표이사가 한국에 설립할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위임 서명후 공증, 법인등기부등본 공증 후 첨부</li> </ul>
여권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외국인</li> </ul>

**Tips (개인 및 법인투자가 공통사항)**

- ◇ 위임장  
투자가 및 한국 현지법인에 취임하는 임원이 회사설립등기신청인(대표이사 또는 법무대리인)에게 한국 현지법인 설립시에 필요한 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 (즉, 위임인, 수임인, 위임하는 내용, 서명 혹은 인감날인의 요소가 들어감)
- ◇ 취임승낙서  
설립예정인 한국 현지법인의 임원(이사, 대표이사, 감사)으로서의 그 직에 취임함을 승낙하는 내용(설립될 한국 현지법인의 주소 및 취임하게 될 임원직위, 서명 혹은 인감날인 등의 요소가 들어감)
- ◇ 서명증명서  
위임장, 취임승낙서 등의 서류에 서명하는 사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서면(본인의 여권에 표시된 사인과 동일한 것)
- ◇ 주소증명서  
취임승낙서 등의 서류에 기입한 본인의 주소지에 대한 증명서로서 임원(이사, 대표이사)만 준비함
- ◇ 외국인(일본인 제외)은 위임장, 취임승낙서, 서명증명서, 주소증명서를 본국 거주지에서 공증 받아야 함(예: 미국 뉴욕주 시민은 뉴욕주 내의 관할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받음)
- ◇ 서류에 성명이 기재되는 모든 주주, 임원(외국인 포함)은 도장 및 설립될 한국현지법인의 인감 준비
- ◇ 발기인과 임원은 동일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음
- ◇ 설립예정인 한국법인의 임원은 내, 외국인에 상관없음

(4) 주식회사 설립비용

- 주식회사 설립시 소요되는 비용으로는 지방등록세, 지방교육세, 채권 및 등기신청 수수료 등이 있음

**회사설립비용(자본금 5,000만원 기준) 예시**

지방등록세 : 자본금의 1,000분의 4이며, 대도시 내에서 설립 하는 경우 3배 증가됨	600,000원
지방교육세 : 등록세의 20%	120,000원
채권매입 : 자본금의 0.1%	50,000원
대법원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15,000원
공증료(정관 등 등기 제출서류 일부)	약 150,000원
합 계	약 935,000원

## Invest KOREA 법인설립 대행 서비스 순서도

절차순서	수행인	소요시간	비고
1. 상담	담당자	약 1시간	- 법인설립지원신청서 제출
2. 상호검색	담당자	약 5분	- 대법원 웹사이트 ( <a href="http://www.scourt.go.kr">www.scourt.go.kr</a> )에서 검색
3. 서류작성	담당자	1 일	-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주주명부, 주식 인수증, 주식청약서,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금납 입보관증명서, 창립사항보고서, 창립총회의사록, 조사보고서, 이사회이사록, 위임장, 취임승락서 등 일체의 등기서류 작성
4. 본점관할구청	신청인		-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제출 후 <u>등록세 및 교육세고지서</u> 를 발급받아 가까운 은행에 납부
5. 인감날인	담당자	30분	- 등기서류 일체
6. 공증사무소	담당자 신청인	1-2시간	- 정관, 이사회이사록, 창립총회의사록 3부씩 공증
7. 은행	신청인		- 외환예치은행에 직접방문하여 은행에서 요구 하는 서류를 제출(정관 및 주주명부, 창립 총회의사록(조사보고서), 이사회이사록, 주식 인수증 등) - 은행장이 날인한 <u>주금납입보관증명서</u> 발급 - <u>도시철도공채</u> - <u>대법원수입증지</u>
8. 상업등기소	담당자 신청인	약 1 시간	- 서류제출 → 서울지방법원 상업등기소 (대표이사 동행) - 등기완료 후 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 법인설립등기는 서류 제출 후 보통 1-2일 후 완료됨

## IV.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 1.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신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

※ 보통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은 세무서에 보관되어 있는 한장의 용지에 동시에 함

(1) 신청장소 : 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 또는 Invest KOREA

(2) 기 한

-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법인설립신고 :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2월 이내

(3) 필요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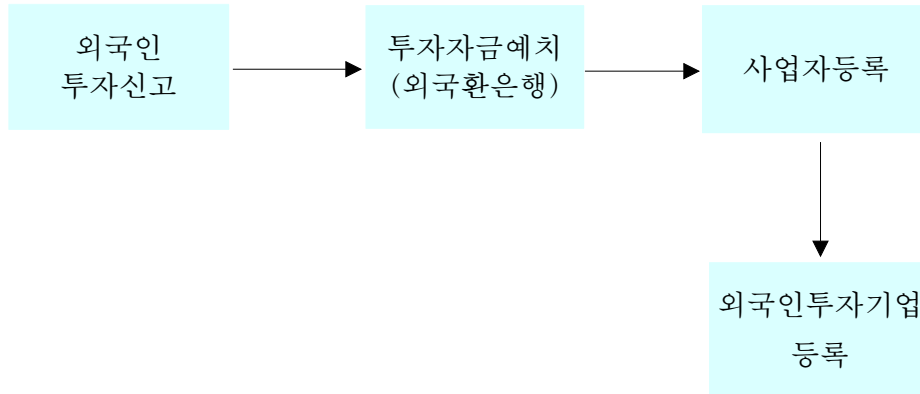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Invest KOREA, 세무서 제공)
- 정관(현물출자시 그 출자목적물명세서 첨부)
- 주주 등의 명세
- 사업허가증 사본 등(허가·인가·신고 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추가 제출  
(단, 보증금이 서울:2.4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1.9억원, 광역시:1.5억원, 그 밖의 지역:1.4억원 이하인 임대차에 한함)
- 기 타
  -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국내에 세금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임직원이 없는 경우)
  - 외화매입·예치 증명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대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2.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

- (1) 일반적으로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신청은 동시에 함
- (2) 외국투자가가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목적물의 통관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현물출자목적물의 수입에 앞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함
- (3) 이러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시는
  -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등(해당시) 또는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

## V.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 1. 등록절차 흐름도



### 2. 외국인투자신고

(1) 신고자 : 투자가 또는 대리인

※ 대리인의 경우 투자가의 서명이 있는(공증은 필요없음) 위임장이 필요함

(2) 신고장소 : Invest KOREA, KOTRA 국내·해외투자거점무역관 및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국내은행 본·지점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3) 신고방법 :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서(별지 서식 1호)의 제출

(4) 신고수리 : 즉시

### 3. 투자자금 송금

○ 국내 자금은 허용되지 않음

○ 은행으로부터 외화매입·예치증명서를 발급받음(사업자등록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시 필요함)

## 4. 사업자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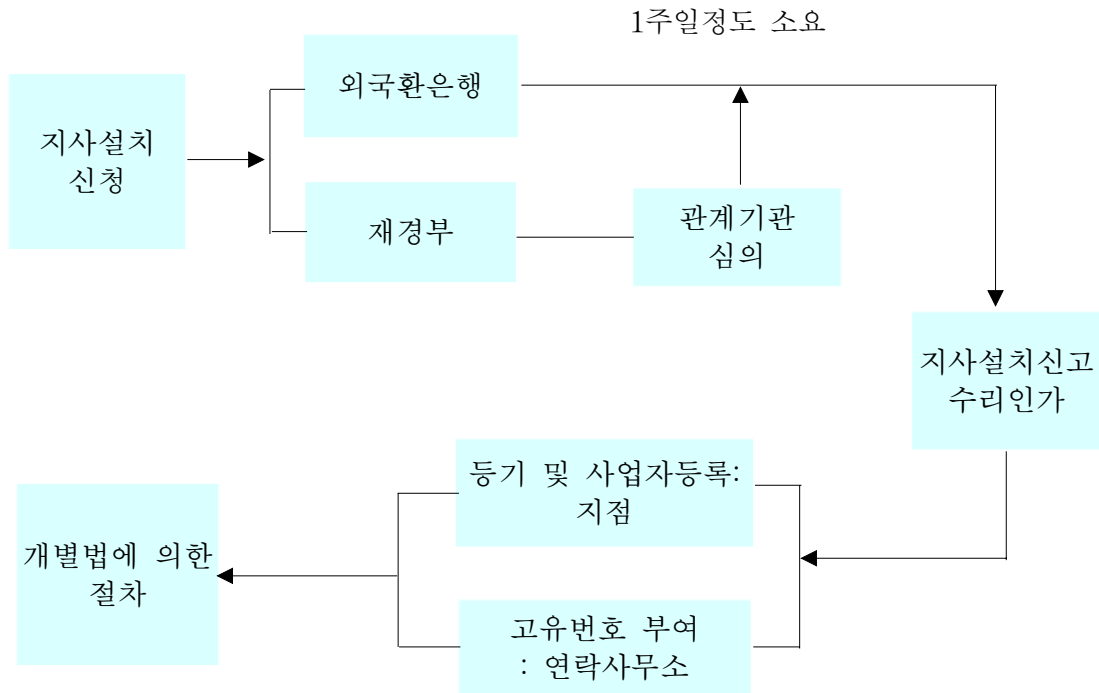
- (1) 신청자 :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을 통한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의 공증을 요함
- (2) 신청장소 :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Invest KOREA
- (3) 기 한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4)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Invest KOREA, 세무서 제공)
  - 사업허가증 사본 등(허가·인가·신고 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추가 제출  
(단, 보증금이 서울:2.4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1.9억원, 광역시:1.5억원, 그 밖의 지역: 1.4억원 이하인 임대차에 한함)
  - 기 타
    -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거나, 6월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등)
    -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공증이 필요함)
    - 외국인투자신고필증
    - 외화매입·예치증명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 5.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1) 등록장소 :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기관 또는 Invest KOREA 행정지원실
- (2) 등록기한 : 출자목적물 납입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3) 필요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외화매입·예치증명서

## VI.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절차

### 1. 국내지사설치 흐름도



### 2. 지사의 구분

#### (1) 지점(branch)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

#### (2)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며, 품질관리, 시장조사, 광고 등의 예비적·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판매 혹은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3. 설치신고

#### (1) 원칙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 (2) 재정경제부 장관에 신고사항(지점 및 연락사무소 공통)

가. 자금의 용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 관련업무

나. 증권 및 보험과 관련된 업무

다.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업무

라. 공서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 (3) 외국환 은행에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 제출서류

가.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7-11호 서식)

나. 본사의 정관(양자 모두 본사소재지의 공증 필요)

○ 법 인: 본사의 정관

○ 개인기업: 공인회계사의 감사 필한 재무제표

다. 국내지사장 임명장

라. 지사설치업무를 타인에게 위임시는 위임장(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마. 본사의 등기부등본 또는 영업허가서(사본 제출시 본사소재지의 공증 필요)

## 4. 지점설치의 등기

### (1) 상법상 개념

- 가. 상법상으로는 지사라는 개념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영업소라고만 규정하고(상법 제614조 - 제621조)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의무화하고 있음
- 나. 등기 실무상으로 외국환관리규정상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일상적인 정보교환 등의 활동만 할 수 있으므로 등기절차가 불필요하고 지점만이 등기절차가 필요함.

### (2) 등기절차

- 가. 등기신청인: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등기를 신청(비송사건 절차법 제228조)
- 나. 등기기간: 영업소를 설치한 날로부터 3주 이내
- 다. 등기사항(상법 제614조 제2,3항)
  -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사항
  - 회사설립의 준거법
  -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라. 신청서 기재사항
  - 회사의 상호: 상호는 한글로 표시하고, 합명·합자·주식·유한회사임을 표시
  - 본 점: 외국본사의 소재장소
  - 영업소: 대한민국에서의 영업소 소재 장소
  - 등기의 목적: 영업소 설치등기
  - 등기의 사유: 영업소의 설치
  - 등기할 사항
    -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내국회사가 등기하여야 할 사항
    - 회사설립의 준거법

-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 주소
- 회사의 설립연월일, 영업소를 설치한 뜻과 그 연월일
- 필요한 인(허)가서의 도달연월일
- 등록세액 등
- 신청연월일
- 외국회사의 상호, 본점,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등기소의 표시

마. 첨부서류(비송사건절차법 제229조)

-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회사설립사항증명서): 관청의 증명서 또는 등기부등본
-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결의서나 당해 회사의 임명장
-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
- 허가 또는 인가서(필요시)
- 위 각 서면의 번역서 및 그 재외관공서 또는 영사의 인증 서면
- 제세 납부영수필통지서 및 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 대리인위임장
- 대표자의 인감 제출: 외국인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의 위임장에 서명을 하고 그 서명에 관하여 본국관공서 또는 본국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가능
- 취임승낙서(대표자)
- 외국인 주소사실증명서 또는 주소증명

바. 등기시 소요비용

- 등록세: 27,600원(수도권 및 대도시에서는 3배 증가)
- 교육세: 등록세의 20%
- 농어촌특별세: 감면되는 등록세의 20%
-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

## 5. 폐쇄 및 청산대금의 회수(외국환거래규정 제7-51조)

### (1) 신고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 등을 받은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거나 폐쇄 후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을 처분하여 외국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2) 회수금액의 한도

국내지사의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 적립금의 합계금액(결손이 있는 경우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 범위내

### (3) 청산대금의 회수 신청서류

- 신청서(규정 별지 제 7-14호 서식) 1부
  - 신청인 선임시 청산인 명의로 신청요
- 신청사유서
- 공인회계사 감사필 청산보고서(폐쇄일 및 청산 종결일 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포함) 1부
- 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적립금 명세표 1부
- 예금잔액증명서 1부(청산보고서상의 송금가능액과 일치해야 함)
- 영업활동지점의 경우 청산종결 등기부등본 1부
  - 청산종결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 제출
    - 폐업신고 사실증명서 1부(관할세무서 발급)
    - 청산인 선임을 입증하는 서류
    - 채권 최고 공고사실 입증서류(신문공고 사본)
    -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 유무확인서 1부(관할 노동사무소장 발급)
- 폐쇄신고서 원본

<별 첨> 법인설립 및 등기에 필요한 양식 견본

1.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	26
2. 정 관 .....	29
3. 주식인수증 .....	35
4. 주식청약서 .....	36
5. 주주명부 .....	38
6. 창립사항보고서 .....	39
7. 주금납입보관증명서 .....	41
8. 주식발행사항동의서 .....	42
9. 창립총회기간단축동의서 .....	43
10. 창립총회의사록 .....	44
11. 조사보고서 .....	47
12. 이사회이사록 .....	49
13. 취임승낙서 .....	51
14. 위임장 .....	52

##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1. 상 호 : ○○○주식회사
2. 본 점 : ○○시 ○○구 ○○동 123-4
3. 등기의 목적 : 주식회사 설립등기
4. 등기의 사유 : 발기인들이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중 일부를 발기인들이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는 주주를 모집하여 이를 인수하게 하고, 주금납입을 완료하고    년    월    일 창립 총회를 종결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합니다.

상 호 : ○○○주식회사

본 점 : ○○시 ○○구 ○○동 123-4

- 목 적 : 1.
- 2.
  - 3.
  4. 기타 각호 관련 부대사업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

1주의 금액: 금       원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되는 주식의 총수:       주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기명식 보통주식       주

자본의 총액: 금       원

공고방법: 대한민국 ○○○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인 ○○○신문에 게재한다.

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이사 ○○○ (       -       )

이사 ○○○ (       -       )

이사 ○○○ (       -       )

※ 외국인일 경우: △△국인 ○○○ (    년    월    일생)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 및 주소

대표이사 ○○○ (       -       )

주 소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감사 ○○○ (       -       )

1. 과세표준액: 금       원정
2. 등 록 세: 금       원정
3. 교 육 세: 금       원정
4. 합       계: 금       원정

첨 부 서 류

정 관	1 통
외국인투자신고필증사본	1 통
주식인수증	1 통
주식청약서	1 통
주식발행사항동의서	1 통
창립총회의사록	1 통
이사 및 감사의 조사보고서	1 통
창립사항보고서	1 통
창립총회소집기간단축동의서	1 통
이사회이사록	1 통
취임승낙서	각 1 통
임원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 통
주금납입보관증명서	1 통
등록세 및 채권 영수증	1 통
인감신고서	1 통
위 임 장	1 통

위와 같이 등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식회사

○○시 ○○구 ○○동 123-4

대표이사 ○ ○ ○

○○지방법원 상업등기소 귀중

# 정 관

## 제1장 총칙

제1조 (상호) 당 회사는 ○○○주식회사라고 부른다.

제2조 (목적) 당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2.
- 3.
4. 기타 각호 관련 부대사업

제3조 (본점의 소재지) ① 당 회사의 본점은 ○○시내에 둔다.

② 당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 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당 회사의 공고는 ○○시내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게재한다.

## 제2장 주식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당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 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당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 ○○○원으로 한다.

제7조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당 회사는 설립시에 ○○○주의 주식을 발행하기로 한다.

제8조 (주식 및 주권의 종류) 당 회사의 주식은 보통주식으로서 전부 기명식으로 하고 주권은 ○주권, ○주권, ○주권의 ○종으로 한다.

제9조 (주금납입의 지체) 주금 납입을 지체한 주주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이 끝날 때까지 지체 주금원에 대하여 일변 10전의 비율로서 과태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10조 (명의 개서) ①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에서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양도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 회사의 청구함에 의하여 제1항의 청구서 이외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과 주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 (질권의 등록 및 신탁재산의 표시)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질권의 등록 또는 신탁 재산의 표시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 등록 또는 표시의 말소를 청구함에 있어서도 같다.
- 제12조 (주권의 재발행) ① 주권의 분할, 병합, 오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 ②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그 재발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당 회사가 정하는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 (수수료) 제11조 내지 제13조에서 정하는 청구를 하는 자는 당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4조 (주주명부의 폐쇄) ① 당 회사는 매년 12월 31일부터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 제15조 (주주의 주소 등의 신고) 당 회사의 주주 및 등록된 질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대표자는 당 회사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그의 성명, 주소와 인감을 당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3장 주주총회

- 제16조 (소집) 당 회사의 정기주주총회는 영업년도 말일의 다음날부터 3월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 소집한다.
- 제17조 (의장)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의 의장이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 다른 이사가 의장이 된다.

제18조 (결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서 한다.

제19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리인이 의결권을 행사함에는 표결전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제4장 임원과 이사회

제21조 (이사와 감사의 원수) 당 회사의 이사 및 감사는 각각 1인 이상으로 한다.

제22조 (이사의 선임) 당 회사의 이사는 제18조의 결의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23조 (감사의 선임) 당 회사의 감사는 제18조의 결의방법에 의하여 선임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분의 ○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4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년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재임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전에 끝날 때는 그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보궐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다른 이사의 잔여 임기와 같이 한다.

제25조 (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 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26조 (이사회회의 소집)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회의 결의) 이사회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제28조 (이사회회의 의사록) 이사회회의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9조 (대표이사) ① 당 회사는 사장 ○인과 필요한 경우에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각 약간 명을 둔다.

② 사장,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중에 선임한다.

③ 사장은 당 회사를 대표한다.

제30조 (업무집행) ① 사장은 당 회사의 업무를 통괄하고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는 사장을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한다.

② 사장이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당 회사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32조 (보수와 퇴직금) 임원의 보수 또는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 제5장 계산

제33조 (영업년도) 당 회사의 영업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동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34조 (재무재표,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① 당 회사의 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서류 및 그 부속명세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 제1항의 서류는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주간 전부터 당 회사의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었을 때에는 그 중 대차대조표를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이익금의 처분) 매기 총수입금에서 총지출금을 공제한 잔액을 이익금으로 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금전에 의한 이익배당액의 ○분의 ○이상
2. 별도적립금 약간
3. 주주배당금 약간

4. 임원상여금 약간

5. 후기이월금 약간

제36조 (이익 배당) 이익배당금은 매결산기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부 칙

제37조 (최초의 영업연도) 당 회사의 최초의 영업연도는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38조 (발기인)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는 이 정관 말미에 기재함과 같다.



주식인수증	
상 호	○○○ 주식회사
인수할 주식 수	주
총 액	금액 원
1 주 의 금 액	금액 원
<p>본인은 ○○○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위와 같이 인수합니다.</p> <p>서기      년      월      일</p> <p>발기인 : ○ ○ ○ ○○시 ○○구 ○○동 123-4</p> <p>○○○ 주식회사 귀중</p>	

주식청약서	
상 호	○○○ 주식회사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주
1 주 의 금 액	금액      원
주 금 총 액	금액      원
<p>위 회사의 정관과 청약서에 기재한 사항을 승낙하고 위와 같이 주식 인수를 청약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서기    년    월    일                      주식청약인 ○ ○ ○                      ○○시 ○○구 ○○동 123</p> <p>○○○ 주식회사 귀중</p>	
정관의 인증 년/월/일과 공증인의 성명	서기    년    월    일
목      적	1. 2. 3. 4. 기타 각호 관련 부대사업

상 호	○○○ 주식회사
본점의 소재지	○○시 ○○구 ○○동 12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
1주의 금액	금액 원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주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대한민국 ○○시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인 ○○신문에 게재 한다.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발기인 ○ ○ ○ ( - ) ○○시 ○○구 ○○동 123 발기인 ○ ○ ○ ( - ) ○○시 ○○구 ○○동 1234 발기인 ○ ○ ○ ( - ) ○○시 ○○구 ○○동 1235
각 발기인의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발기인 ○○○는 △△주, ○○○는 △△주 기명식 보통주식을 각각 인수하였다.
주금납입일	년 월 일
주금 납입을 맡을 은행과 납입장소	△△은행 ○○○지점

## 주주명부

1주의 금액 :                    원                    자본금 :                    원정

1. ○ ○ ○	×× 주
2. ○ ○ ○	×× 주
3. ○ ○ ○	×× 주
4. ○ ○ ○	×× 주

합계 ××× 주

위는 당 회사의 주주명부임에 틀림없음.

년 월 일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 창립사항보고서

본인들은 ○○○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창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1. 본인들은 사업목적을

- 1)
- 2)
- 3)
- 4) 기타 각호 관련 부대사업

으로 정하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주, 1주의 금액은 금 △△원, 자본금 △△△원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기획하였습니다.

2. 본인들은 ○○○씨를 발기인 대표로 선임하고 회사설립까지의 필요한 사항에 있어 발기인을 대표하기로 정하였습니다.

3. 발기인 전원이 모여 년 월 일 정관을 작성하고 동년 월 일 공증인 변호사에게 인증 받았습니다.

4. 발기인들은 년 월 일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주 중 △주를 인수하고 잔여주식 △주에 대하여는 주식청약서를 작성하고 주주의 모집에 착수하였습니다.

5. 위 모집에 앞서 발기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액면 1주의 금액을 금△△ 원으로 하기로 결의하였으며, 년 월 일까지 ○○○씨가 주식 인수를 청약하여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 △△△주의 인수가 완료되었습니다.

6. 위 인수된 주식에 대하여는 년 월 일 납입을 맡을 ○○은행 ○○지점에 동년 월 일까지 납입할 것을 통지하였는 바, 동년 월 일 그 납입이 완료되었으며, 주금납입금은 회사의 위 명의로 ○○은행 ○○지점에 별도 예금으로 보관되어 있으며, 위 은행에서 발행한 주금납

입금보관증명서에 의하여 납입이 확인됩니다.

7. 회사에 현물출자를 한 사람은 1명도 없고 기타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신청할 사유(상법 제290조에 정한 사항)를 정관에 정한 바 없으므로 아무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8. 이상과 같이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에 대한 인수와 납입이 완료되었으므로 회사의 발기인들인 본인들은 하루속히 회사를 설립시키고자 주식인수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 소집기간을 단축하여 금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 주식회사

발기인 : ○ ○ ○

발기인 : ○ ○ ○

발기인 : ○ ○ ○

○○○ 주식회사

##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금액 : 금                      원정 (₩                      )

위 금액은 귀 회사 설립시에 발행된 주식 △△ 주 (1주의 금액 : 금                      원)에 대한 납입금으로서                      년                      월                      일 납입이 완료되어 현재 이를 보관증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 주식회사 귀중

## 주식발행사항동의서

하기 발기인들은 전원의 동의로 회사 설립시에 발행할 주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 동의함.

1. 주식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 주 (액면금액 : △△ 원)

2.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수와 금액

해당사항 없음

년      월      일

발기인 ○ ○ ○

발기인 ○ ○ ○

발기인 ○ ○ ○

○○○ 주식회사 귀중

## 창립총회기간단축동의서

아래에 기명날인한 본인들은 ○○○주식회사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위 회사의 정관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창립총회의 소집기간을 단축하여 아래와 같이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데에 동의하며 이 회의에서는 위와 같은 통지가 적법하게 주어진 회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일 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장 소: ○○시 ○○구 ○○동 123

- 의 안: 1. 창립사항보고의 건  
 2. 정관승인의 건  
 3. 이사, 감사 선임의 건  
 4. 상법 제 298조에 정한 사항의 조사보고의 건  
 5. 본점설치장소 결정의 건

년    월    일

주식인수인 ○ ○ ○

주식인수인 ○ ○ ○

주식인수인 ○ ○ ○

주식인수인 ○ ○ ○

## 창립총회의사록

아래와 같이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일 시 :    년    월    일 오전    시

장 소 : ○○시 ○○구 ○○동 123

인수한 주식의 총수 :        주

주식인수인의 총수 :        명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총수 :        명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주식 :        주

발기인 대표 ○○○씨는 위와 같이 상법 제 309조에 정한 정족수가 출석하였으므로 이 총회는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보고하고 의사를 진행하기 전에 임시 의장을 선임할 것을 구하자 출석한 주식인수인들은 전원일치로 발기인 대표 ○○○씨를 임시의장으로 선임하였다.

이에 동인은 그 자리에서 취임을 승낙하고 의장석에 등단하여 개회를 선언하고 다음과 같은 의안의 심의를 구하였다.

### 제1호 의안 : 창립사항 보고의 건

발기인 대표 ○○○씨는 발기인을 대표하여 별지 창립사항보고서와 같이 창립총회까지의 경과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보고하자 출석한 주식인수인들은 전원일치로 이를 승인하였다.

### 제2호 의안 : 정관 승인의 건

임시의장은 정관을 낭독하고 축조 설명을 가한 후 출석한 주식인수인들에게 그 적합성과 채택여부를 물은 즉 출석한 주식인수인들은 전원일치로 이를 승인하였다.

제3호 의안 :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

임시의장이 이사 2인, 감사 1인을 선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출석한 주식인수인들은 전원일치로 다음 사람들을 이사 및 감사로 선출하였다.

이 사 : ○ ○ ○

이 사 : ○ ○ ○

감 사 : ○ ○ ○

동인들은 그 자리에서 취임을 승낙하였다. 이어 출석한 주식인수인들은 임시의장의 제의에 따라 전원일치로 이사 ○○○씨를 의장으로 선임하였으며, 이에 동인은 그 자리에서 취임을 승낙하고 의장석에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였다.

제4호 의안 : 상법 제313조에 정한 사항의 조사 보고의 건

의장은 모든 이사와 감사가 상법 제313조에 정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여야 함을 설명한 후 발기인이었던 이어나 감사는 그러한 조사에 참가하지 못함을 밝히고 발기인이 아닌 이사 및 감사에게 상법 제313조에 정한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요청하였다.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감사 ○○○씨가 별지 조사보고서와 같이 보고하였다. 출석한 주식인수인들은 그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이를 전원일치로 승인하였다.

제5호 의안 : 본점 설치장소의 결정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본점을 다음 장소에 설치하려고 한다고 밝히고 그 장소가 적당한지의 여부를 물었다. 이에 출석한 주식인수인들은 의장이 제안한 바와 같이 본점을 다음 장소에 설치할 것을 전원일치로 승인하였다.

본 점 : ○○시 ○○구 ○○동 123

이상으로서 금일 총회의 의안 전부를 심의 종료하였으므로 의장은 ○시 ○분에 폐회를 선언하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하였다.

서기    년    월    일

○○○ 주식회사

의장 이 사 : ○ ○ ○

이 사 : ○ ○ ○

이 사 : ○ ○ ○

## 조사보고서

본인들은    년    월    일에 개최된 ○○○ 주식회사의 창립총회에서 회사의 이사 및 감사로 선임되었는 바, 이에 상법 제 313조에 정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 1.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총수에 대한 인수의 정확 여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주이며,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주, 1주의 금액은 금 △△원인 바 그 인수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수 : △△ 주

서기    년    월    일 인수 완료

주식청약인이 인수한 주식수 : △△ 주

서기    년    월    일 인수 완료

### 2. 인수 주식에 대한 납입의 정확 여부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주에 대하여 금 △△△원의 납입이    년    월    일 납입완료되었음을 ○○은행 ○○지점에서 발행한 주금납입보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 3. 현물출자 및 기타 조사사항

회사에 현물출자하는 사람은 1명도 없고, 기타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신청할 사유(상법 제290조에 정한 사항)를 정관에 정한 바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경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위와 같이 조사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검 사 인 : ○ ○ ○

○○○ 주식회사 귀중

## 이사회 의사록

일 시 : 서기    년    월    일 오전 시 분

장 소 : ○○시 ○○구 ○○동 123 에서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으므로 상법 제390조 제3항  
에 따라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다음 의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하다.

이사총수 : ○ 명

출석이사수 : ○ 명

감사총수 : ○ 명

출석감사수 : ○ 명

이사 ○○○씨가 임시의장으로 선출되다.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의장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의 선임을 요구한 바, 출석이사들은 신중한 협의를  
거친후 다음 사람을 선임하다.

대표이사 : ○ ○ ○

제2호 의안: 본점 설치장소의 결정의 건

의장은 본 회사의 본점을 다음 장소에 설치하려고 한다고 밝히고 그 장소가 적당한지의  
여부를 물었다. 이에 출석한 주식인수인들은 의장이 제안한 바와 같이 본점을 다음 장소에  
설치할 것을 전원일치로 승인하였다.

본 점 : ○○시 ○○구 ○○동 123

이상 회의의 목적인 의안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의장은 폐회를 선언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다음에 기명 날인하다.

서기   년   월   일

○○○ 주식회사

의장 대표이사 : ○ ○ ○

이 사 : ○ ○ ○

감 사 : ○ ○ ○

## 취임승낙서

아래 기명날인한 본인은 \_\_\_\_\_ 에 소재한 \_\_\_\_\_ 주식회사에  
\_\_\_\_\_ 직으로 취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주소 :

주식회사 귀중

## 위 임 장

(수임인)

성 명 :

주 소 :

본인은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사람에게 다음 사항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1. 주식회사 \_\_\_\_\_의 설립등기신청
2. 정관, 창립총회의사록, 이사회이사록, 취임승낙서 등 등기관련서류의 공증행위 일체
3. 기타 위 등기신청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

공증받은 이 서류는 -----부터 -----일 까지 유효하다

년 월 일

(위임인)

성 명 :

주 소 :

# 外国人のための法人設立ガイドブック

2006. 1

**Invest KOREA**

- 本書は、日本人が韓国における法人設立をご計画の際、その手続きについて当外国人投資支援センター(Invest KOREA)が実務的経験に基づいて作成したガイドブックです。従って、ご使用の上で厳格さの求められる法律用語とは若干異なる場合もあり、その点ご了承ください。ちなみに実際の業務にあたっては必ずその内容をお確かめください。
- 本書に関する詳細は、Invest KOREAの総合行政支援室までお問い合わせ下さい。
- 本書の著作権は、大韓民国のInvest KOREAが一切の権利を有します。
- 住所：ソウル特別市瑞草区廉谷洞300-9KOTRA(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  
Invest KOREAの総合行政支援室(〒137-749)
- 電話：(82-2)3460-7545
- ファックス：(82-2)3460-7946/7947
- ホームページ：www.investkorea.org

※ 本文の中の法／令／規則とは、外国人投資促進法／施行令／施行規則のことです。

# 目 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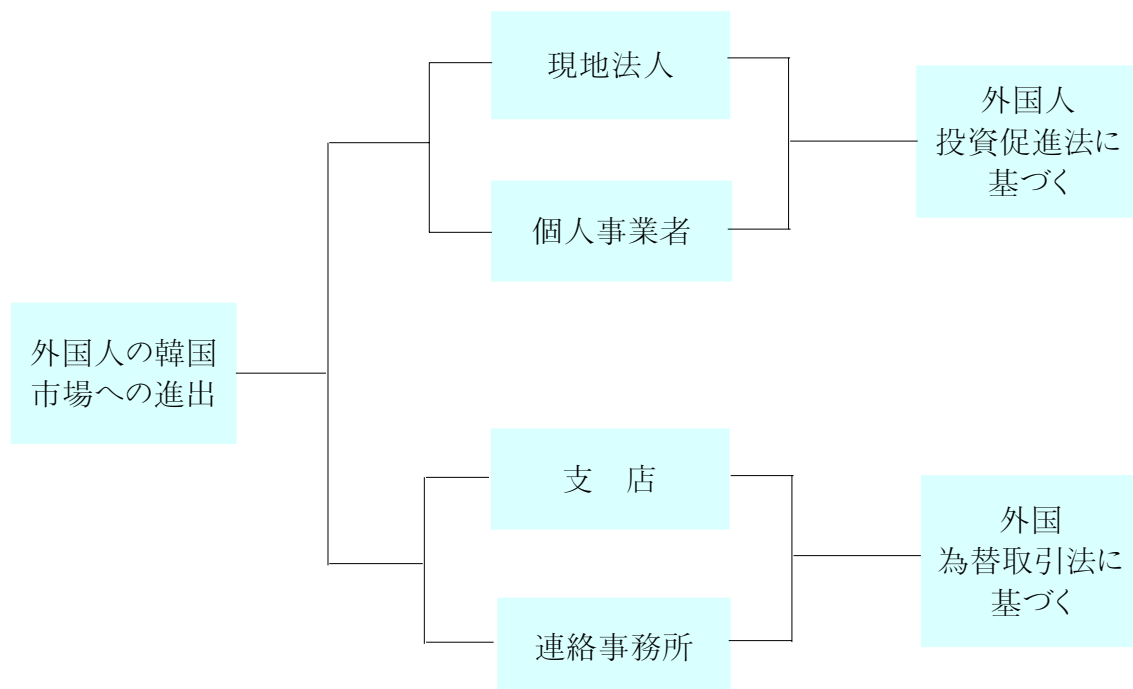
I. 外国人の韓国市場への進出方法 .....	1
1. 現地法人 .....	2
2. 個人事業者 .....	2
3. 支店 .....	3
4. 連絡事務所 .....	4
II. 現地法人の設立手続き .....	5
1. 現地法人設立の流れ .....	5
2. 外国人投資申告 .....	5
3. 外国人投資資金の導入 .....	6
4. 会社の設立登記 .....	7
5. 事業者登録 .....	7
6. 払込資本金の法人口座への振込み .....	7
7. 外国人投資企業の登録 .....	7
III. 会社設立の登記手続き .....	9
1. 会社設立の形態 .....	9
2. 株式会社の設立手続き .....	9
3. 株式会社の設立登記 .....	10

IV. 法人設立申告及び事業者登録 .....	16
1. 事業者登録と法人設立申告を同時に行う場合 .....	16
2. 先に事業者登録を行う場合 .....	17
V. 個人事業者の登録手続き .....	18
1. 登録手続きの流れ .....	18
2. 外国人投資申告 .....	18
3. 投資資金の送金 .....	18
4. 事業者登録 .....	19
5. 外国人投資企業の登録 .....	19
VI. 外国企業の韓国支社設立の手続き .....	20
1. 韓国支社設立の流れ .....	20
2. 支社の区分 .....	20
3. 設立申告 .....	21
4. 支店の設立登記 .....	22
5. 閉鎖及び清算代金の回収 .....	24
■ 〈別添〉 法人設立及び登記に必要な様式(見本) .....	25

## I. 外国人の韓国市場への進出方法

新規参入を計画している外国人が韓国へ進出する方法は4つ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つまり外国人投資促進法が適用される現地法人の設立、個人事業者の登録、外国為替取引法に基づいた支店または連絡事務所の設置などである。ただ、連絡事務所の設置は韓国において所得が発生しない場合に限る。

### 外国人の韓国市場への進出方法



※ ただし、外国法人の韓国における個人事業者登録は認められない。

## 1. 現地法人

外国人または外国企業の韓国における現地法人の設立を通じた投資は、外国人投資促進法及び商法などに基づいて行われるべく、内国法人と同様に扱われる。また、資本金は5千万ウォン以上でなければならない。

## 2. 個人事業者

個人事業者も投資金額が5千万ウォン以上の場合は外国人直接投資として認められる。事業経営においては現地法人との差はほとんどないものの、現地法人に比べ開業や休・廃業が簡単で、社会的責任などが重くないことが長所である。一方、対外信用度が低く、資金調達及び優秀人材の確保が容易でないため、主として零細ビジネスに適している。

### 個人事業者と法人との違い

区分	個人事業者	法人(株式会社)
一般的特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企業の所有者が企業の利潤を独占</li> <li>2. 企業設立が容易</li> <li>3. 意思決定が速い</li> <li>4. 企業の所有者が無限責任</li> <li>5. 資本調達の能力に限界あり</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資本の調達及び形成が容易</li> <li>2. 企業設立の手続きが複雑</li> <li>3. 意思決定が遅い</li> <li>4. 投資資本の範囲内で有限責任</li> <li>5. 所有と経営の分離が可能</li> </ol>
適正規模	小規模	中・大規模
登記	登記不要	登記必要
法的出資者	代表者	1人以上の発起人
出資金額	5千万ウォン以上	5千万ウォン以上

### 3. 支店

外国企業が韓国において通常の営業活動を行うためには、韓国支店の代表者を任命し、外国為替銀行にて支店設置を申請するなど外国為替取引法に基づいた所定の手続きを踏ま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後、裁判所に登記する必要がある。また、支店は税法上固定事業場として認識され、韓国内での事業から発生する所得に対しては内国法人と同様の法人税率が適用される。

#### 外国人投資企業と国内支店との違い

区分	外国人投資企業	外国企業の国内支店
根拠法規	外国人投資促進法	外国為替取引法
法人の性格	内国法人	外国法人
一体性	外国投資家と外国人投資企業が別の法人格体(会計・決算が独立)	本店と支社が同一の法人格体(会計・決算が同一)
申告の受理・許認可機関	Invest KOREA、KOTRAの国内・海外貿易センター、外国為替銀行の本・支店	外国為替銀行の支店(申告)、財政経済部(金融業などに関する許認可)
最小(最大)の投資金額	最小：一件当たり5千万ウォン 最大：制限無し	金額の制限無し
法人税率	国内外の全ての所得に対し納税の義務有り 1億ウォン以下：13% 1億ウォン超過：25%	国内源泉所得に限って納税の義務有り 1億ウォン以下：13% 1億ウォン超過：25% * 支店税納税の義務(フランス、オーストラリア、カナダなど)

※法人税率は2005.1.1から13%、25%が適用される(その以前は1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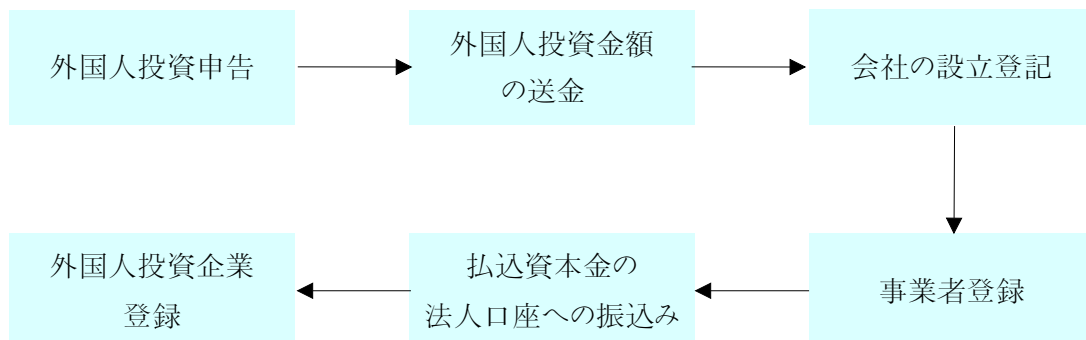
## 4. 連絡事務所

支店は韓国における営業活動が可能であるのに対し、連絡事務所は市場調査、業務連絡などのような非営業活動に限定される。従って、連絡事務所は管轄税務署から事業者登録に準ずる固有番号が交付され、裁判所に登記する必要はない。

## II. 現地法人の設立手続き

- 現地法人の設立手続きは、①外国人投資の申告手続き、②会社設立の登記手続き(個人事業者の登録手続き)、③外国人投資企業の登録手続きの3段階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
- 外国人の場合は会社設立登記前、外国人投資申告及び会社設立登記後、外国人投資企業登録の届出が追加されるのみで、それ以外は内国人による法人設立の手続きと同様である。

### 1. 現地法人設立の流れ



### 2. 外国人投資申告

(1) 申告者：外国投資家または代理人

※ 代理人による申告の場合は、投資家の署名付き委任状を添付する。

(2) 申告先：Invest KOREA、KOTRAの国内・海外貿易センターまたは受託機関として指定された国内銀行の本・支店及び外国銀行の国内支店

(3) 提出書類

- 新株などの取得による外国人投資申告書（別紙様式1号）2通
- 委任状（代理申告の場合）
- 外国人の国籍証明書（個人投資家はパスポートの写し）

(4) 処理期間：即時

### 3. 外国人投資資金の導入

(1) 導入方法：送金または税関を通じた携帯搬入

(2) 送金する場合の口座

- 指定の取引外国為替銀行から交付される臨時番号を使用する。
- 口座番号が無くても、受取人及び受取銀行の情報だけで資金の送金及び受取が可能である。

#### 投資資金送金伝票の作成例

受取銀行名：〇〇銀行△△支店

送金者：投資家の氏名

受取人：新設または合弁予定の会社名

資金の用途：〇〇会社設立または投資資金と明示

(3) 送金後、両替して資本金勘定（株式払込金保管勘定）に振り替える。

(4) 銀行から株式払込金保管証明書を発給してもらい、会社設立登記時に提出する。

- ※ 銀行によって異なるが、株式払込金保管証明書発給の際に定款、創立総会議事録、理事会議事録、新株引受書など公証を受けた原本または写しの提出が求められる場合もあるため、あらかじめ確認して置く必要がある。

4. 会社の設立登記：会社設立登記の手続きは10ページにおいて詳しく説明する。

5. 事業者登録：事業者登録は19ページにおいて詳しく説明する。

## 6. 払込資本金の法人口座への振込み

新設会社は会社設立登記及び事業者登録手続きの完了とともに法律上の効力を持つ法人となり、銀行に保管されている払込資本金は新設法人口座へ振り込まれる。

※ 払込資本金を新設法人口座へ振り込む際には、法人登記簿謄本、法人印鑑証明書、法人印鑑、事業者登録証の写し、通帳に登録する印鑑(個人/法人)、代表理事の身分証明書の原本などが必要であるが、各銀行ごとに要求する書類が異なる場合もあるので、事前確認が必要である。

## 7. 外国人投資企業の登録

(1) 登録先：外国人投資申告の届出を出した機関

(2) 登録期限：出資目的物の納入完了日から30日以内

(3) 提出書類

- 外国人投資企業登録申請書1通
- 法人登記簿謄本の写し1通
- 外貨買入れ証明書・外貨預託証明書の写し1通

(4) 上記書類を備えて申請すれば、直ちに外国人投資企業登録証が発給される。同登録証の用途は次のとおりである。

- 配当金など投資果実の海外送金

- ※ 外国人投資企業が投資果実を海外に送金するには外国人投資企業登録証の写しと理事会決議書(配当内容を含む)、公認会計士監査済みの財務諸表などが必要だ。これは一般の海外送金に比べて全ての手続きが簡素になった。
- 投資家の長期在留ビザ(D-8)の申請
  - ※ 投資家のビザ申請
    - ① 申請先：Invest KOREA、管轄の出入国管理事務所、在外韓国領事館  
(中国人は例外)
      - ・ Invest KOREA：企業投資(D-8)資格への在留資格の変更
      - ・ 出入国管理事務所：査証発給認定書の発給及び在留資格の変更
    - ② 必要書類：外国人投資申告済書の写し、外国人投資企業登録証、法人登記簿謄本(または事業者登録証の写し)、派遣命令書または在職証明書、パスポート、査証発給申請書など

## III. 会社設立の登記手続き

- 商法上の会社形態には、合名・合資・株式・有限会社の4種類があるが、ほとんどが株式会社であるため、株式会社の設立手続きを中心に説明する。
- 会社の設立登記は、弁護士や司法書士、またはInvest KOREAに依頼するのが望ましい。ただ、Invest KOREAに依頼する場合は、本社の所在地がソウルでなければならず、登記を行う当日には現地法人の代表理事が同行しなければならない。

### 1. 会社設立の形態

- (1) 発起設立：発行する株式総数を発起人の引き受けによって会社を設立する形態
- (2) 募集設立：発行する株式総数の一部を発起人が引き受け、残りは募集によって会社を設立する形態

### 2. 株式会社の設立手続き

- (1) 発起人の構成
- (2) 定款の作成及び公証
- (3) 株式発行に関する事項の決定
- (4) 発起人総会及び議事録の作成
- (5) 発起人による株式の引受(発起設立)、発起人による株式の引受と株主の募集・割当て(募集設立)
- (6) 現金(現物を含む)出資の履行
- (7) 理事及び監査役による設立経過の調査(発起設立は定款に変態設立事項のない場合に限る)/検査人または鑑定人による変態設立事項に関する設立経過の調査及び報告(発起設立の場合は発起人に、募集設立の場合は創立総会に報告する)

- (8) 創立総会の開催(発起設立の場合は不要)
- (9) 理事会の開催
- (10) 法人の設立登記
- (11) 法人設立申告及び事業者登録

### 3. 株式会社の設立登記

#### (1) 登記期間

- イ. 発起設立：設立経過調査の終了日から2週間以内
- ロ. 募集設立：創立総会の終了日から2週間以内

#### (2) 登記前の主要決定事項

##### イ. 発起人の構成

- 株式会社は1人以上の発起人が必要
- 発起人とは、定款に署名または記名捺印した人を言い(商法第289条)、外国人または韓国内の非居住者であってもその資格に関する法律上の制約はないため、発起人になれる。
- 発起人の株式引受は書面によって引き受けなければならず、これによって発起人は新設会社の株主になる。(商法第293条)

##### ロ. 類似商号の検討

- 同一行政区域(ソウル特別市・広域市・市または郡)においては、同一業種で既に他人が登録したものと類似した商号は登記できない。このため会社名を決める前に、あらかじめ調べて置く必要がある。(商法第22条)
- 企業の商号は最高裁判所のウェブサイト([www.scourt.go.kr](http://www.scourt.go.kr))の「法人登記商号検索」で調べられる。より明確な商号検索のためには、ソウルの場合、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の商号登記所に「商号検索」を申し込むことができる。

## (3) 登記申請時の必要書類

## イ. 登記申請時の必要書類リスト

申請者の準備書類	Invest KOREAの支援
1. 国人投資申告済証	10. 株式会社設立登記申請書
2. 委任状： ① 代表理事による登記申請：代表理事が全ての委任状に対する受任者となる。 ② 司法書士による登記申請：発起人・役員にかかわらず、代理人が受任者となる。	11. 公証を受ける書類：定款、創立総会議事録(創立事項報告書、調査報告書を含む)、理事会議事録
3. 役員の就任承諾書 ① 内国人：印鑑捺印後、印鑑証明書及び住民登録証を添付する。 ② 外国人：公証を受けた署名及び住所証明書の原本、パスポートの写しを添付する。	12. 創立総会期間短縮同意書 13. 株式発行事項同意書 14. 株式引受証
4. 株金納入保管証明書(株式払込金保管証明書)	15. 株式請約書(株式引受契約の申込書)
5. 法人の印鑑	16. 印鑑申告書
6. 債券	17. 株主名簿
7. 大法院(最高裁判所)の収入証紙	
8. 地方登録税、教育税の納付領収書：本店所在地の区役所税務課から発給してもらい、銀行に納付する。	
9. 役員及び発起人個人の登録印判(外国人を含む)	

※ 各書類の見本は別添をご参照ください。

## ロ. 海外における投資家の準備書類

- 投資家が個人であるか、法人であるかによって海外における準備書類が異なる。ただ、日本投資家の場合は韓国の法人、個人が用意する書類と同様である。

### 個人投資家の準備書類

委任状(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投資家/役員など書類に氏名が記載される全員の委任状が必要</li> <li>・ 韓国人/日本人：委任状に印鑑捺印</li> <li>・ 外国人：委任状に署名後、公証が必要</li> </ul>
就任承諾書(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役員に登載した全員が必要</li> <li>・ 韓国人/日本人：就任承諾書に印鑑捺印</li> <li>・ 外国人：承諾書に署名後、公証が必要</li> </ul>
印鑑証明書(2) 住民登録謄本(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委任状/就任承諾書の添付書類(韓国人/日本人に限る)</li> <li>－居住地で公証してもらった住所証明書(2)、署名証明書(2)の原本(外国人)</li> </ul>
パスポートの写し(1)	－全ての外国人

### 法人投資家の準備書類

委任状(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投資家/役員など書類に氏名が記載される全員の委任状が必要</li> <li>・ 韓国人/日本人：委任状に印鑑捺印</li> <li>・ 外国人：委任状に署名後、公証が必要</li> </ul>
就任承諾書(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役員に登載した全員の就任承諾書が必要</li> <li>・ 韓国人/日本人：就任承諾書に印鑑捺印</li> <li>・ 外国人：承諾書に署名後、公証が必要</li> </ul>
印鑑証明書(2) 住民登録謄本(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委任状/就任承諾書の添付書類</li> <li>・ 韓国人/日本人：住民登録謄本(2)、印鑑証明書(2)</li> <li>・ 外国人：居住地で公証してもらった住所証明書(2)、署名証明書(2)の原本</li> </ul>
法人登記簿謄本 法人委任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韓国法人/日本法人：委任状に法人の印鑑捺印後、法人印鑑証明書、法人登記簿謄本を各1通ずつ添付</li> <li>・ 外国法人：外国法人の代表理事が韓国に設立する法人の代表理事に委任する委任状(署名後公証)、法人登記簿謄本(公証後添付)</li> </ul>
パスポートの写し	全ての外国人

### Tips(個人及び法人投資家の共通事項)

#### ◇委任状

投資家及び韓国の現地法人に就任する役員が会社設立登記申請者(代表理事または法務代理人)に韓国現地法人の設立時に必要な行為に対する権限を委任する事項(つまり委任者、受任者、委任する内容、署名または印鑑による捺印が盛り込まれる)

#### ◇就任承諾書

設立予定の韓国現地法人の役員(代表理事、理事、監査役)として、その職に就くことを承諾する内容(設立される韓国の現地法人の住所及び就任する役員の職位、署名または印鑑による捺印などが盛り込まれる)

#### ◇署名証明書

委任状、就任承諾書などの書類に署名するサインが本人のものであることを証明する書面(本人のパスポートに表示されたサインと同様のもの)

#### ◇住所証明書

就任承諾書などの書類に記入した本人の住所地に対する証明書で、役員(代表理事、理事)のみ必要

◇外国人(日本人は除く)は委任状、就任承諾書、署名証明書、住所証明書を本国の居住地で公証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例：米国ニューヨーク州の市民は同州管轄の公証役場で認証を受ける)

◇書類に氏名が記載される全ての株主、役員(外国人を含む)は印鑑及び設立される韓国現地法人の印鑑を準備

◇発起人と役員は同一人でなくても構わない。

◇設立予定の韓国現地法人の役員は国籍を問わない。

(4) 株式会社の設立費用

- 株式会社設立時の所用費用には、地方登録税、地方教育税、債権及び登記申請の手数料などがある。

会社設立費用(資本金5千万ウォン基準)の例示

地方登録税：資本金の1,000分の4であり、大都市内に設立する場合はその3倍が課せられる。	600,000ウォン
地方教育税：登録税の20%	120,000ウォン
債権の買入れ：資本金の0.1%	50,000ウォン
最高裁判所の収入証紙(登記申請の手数料)	15,000ウォン
公証の手数料(定款など、登記提出書類の一部)	約150,000ウォン
合 計	約935,000ウォン

## Invest KOREAの法人設立代行サービスの手順

手続きの手順	遂行人	所要時間	備 考
1. 相談	担当者	約1時間	一法人設立支援申請書を提出
2. 商号の検索	担当者	約5分	一最高裁判所のウェブサイト( <a href="http://www.scourt.go.kr">www.scourt.go.kr</a> )で検索
3. 書類の作成	担当者	1日	一株式会社設立登記申請書、定款、株主名簿、株式引受書、株式請約書、株式発行事項同意書、株式払込金保管証明書、創立事項報告書、創立総会議事録、調査報告書、理事会議事録、委任状、就任承諾書など一切の登記書類を作成
4. 本店管轄の区役所	申請者		一株式会社設立登記申請書を提出した後、 <b>登録税及び教育税の告知書</b> を発給してもらい、最寄りの銀行に納付
5. 印鑑押捺	担当者	30分	一切の登記書類
6. 公証役場	担当者 申請者	1~2時間	一定款、理事会議事録、創立総会議事録各3通を公証
7. 銀行	申請者		一外貨を預けた銀行を訪れ、銀行の要求する書類を提出(定款及び株主名簿、創立総会議事録(調査報告書)、理事会議事録、株式引受書など) 一銀行頭取の職印が押捺された <b>株式払込金保管証明書</b> を発給 一 <b>都市鉄道の公債</b> を買入れ 一 <b>最高裁判所の収入証紙</b> を買入れ
8. 商業登記所	担当者 申請者	約1時間	一書類の提出：ソウル地方裁判所の商業登記所 (代表理事が同行) 一登記後、登記簿謄本及び法人印鑑証明書を発給 ※法人設立登記は書類提出後、1~2日所要

## IV. 法人設立申告及び事業者登録

### 1. 事業者登録と法人設立申告を同時に行う場合

※ 一般的に法人設立申告と事業者登録申請は、税務署所定の様式に必要項目を記入して提出することで同時に行われる。

(1) 申請先：本店所在地の管轄税務署、またはInvest KOREA

(2) 期限

- 事業者登録：事業開始日から20日以内
- 法人設立申告：法人設立登記日から2ヵ月以内

(3) 必要書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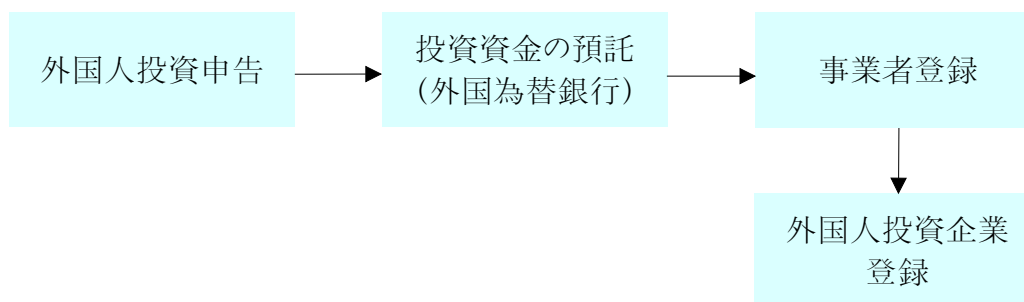
- 法人設立申告及び事業者登録申請書(Invest KOREA、税務署所定の様式)
- 定款(現物出資の場合、その出資目的物明細書を添付)
- 株主などの明細
- 事業許可証の写しなど(許認可・申告などが求められる事業である場合)
- 賃貸借契約書の写し(事業場を賃貸した場合)
  - ※ 商店街建物の一部分を賃貸した場合、該当部分の図面を追加提出  
(ただし、保証金がソウル：2.4億ウォン、首都圏の過密抑制地域：1.9億ウォン、広域市：1.5億ウォン、その他の地域：1.4億ウォン以下の賃貸借に限る)
- その他
  - 納税管理人設定申告書(国内に税金関連事項を処理する職員がない場合)
  - 外貨買入れ・預託証明書の写し
  - 外国人登録証またはパスポートの写し(代表者が非居住者である場合)

## 2. 先に事業者登録を行う場合

- (1) 一般的に法人設立申告と事業者登録申請を同時に行う。
- (2) 外国投資家の現物出資による法人設立の場合、現物出資目的物通関の際、付加価値税を還付してもらうためには事業者登録証が必要となる。従って、投資目的物の輸入に先立ち事業者登録を済ませなければならない。
- (3) 事業者登録申請の際には
  - 発起人の住民登録謄本、
  - 賃貸借契約書の写し、
  - 事業許可申請書の写しなど(該当の場合) 、または事業計画書が必要である。

## V. 個人事業者の登録手続き

### 1. 登録手続きの流れ



### 2. 外国人投資申告

- (1) 申告者：投資家または代理人  
※ 代理人の場合は投資家署名付きの委任状(公証は不要)が必要である。
- (2) 申告先：Invest KOREA、KOTRA国内・海外貿易センター及び受託機関に指定された国内銀行の本・支店及び外国銀行の国内支店
- (3) 申告の方法：新株などの取得による外国人投資申告書(別紙様式1号)の提出
- (4) 申告の受理期間：即時

### 3. 投資資金の送金

- 韓国の国内資金は認められない。
- 銀行から外貨買入れ・預託証明書を発給してもらう。(事業者登録及び外国人投資企業登録の際に必要となる)

## 4. 事業者登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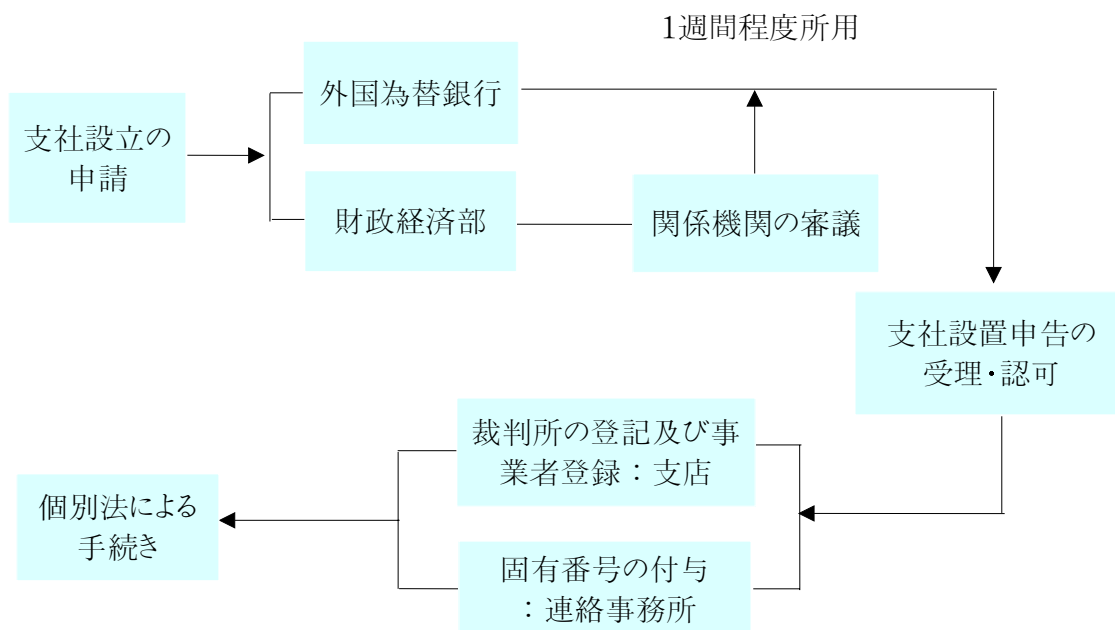
- (1) 申請者：本人による申請が原則であるが、代理人による申請の場合には公証付きの委任状でなければならない。
- (2) 申請先：事業場の管轄税務署あるいはInvest KOREA
- (3) 期限：事業開始日から20日以内
- (4) 必要書類
  - 事業者登録申請書(Invest KOREA、税務署所定の様式)
  - 事業許可証の写しなど(許認可・申告などが求められる事業である場合)
  - 賃貸借契約書の写し(事業場を賃貸した場合)
    - ※ 商店街建物の一部分を賃貸した場合、該当部分の図面を追加提出  
(ただし、保証金がソウル：2.4億ウォン、首都圏の過密抑制地域：1.9億ウォン、広域市：1.5億ウォン、その他の地域：1.4億ウォン以下の賃貸借に限る)
  - その他
    - 納税管理人設定申告書(通常、事業者が事業場に駐在しない場合や海外における在留期間が6か月以上の場合など)
    - 共同事業者の場合は合弁契約書(公証が必要)
    - 外国人投資申告済証
    - 外貨買入れ・預託証明書の写し
    - 外国人登録証またはパスポートの写し(事業者が非居住者である場合)

## 5. 外国人投資企業の登録

- (1) 登録先：外国人投資申告の届出を出した受託機関またはInvest KOREAの行政支援室
- (2) 登録期限：出資目的物の納入完了日から30日以内
- (3) 必要書類
  - 外国人投資企業登録申請書
  - 事業者登録証
  - 外貨買入れ・預託証明書

## VI. 外国企業の韓国支社設立の手続き

### 1. 韓国支社設立の流れ



### 2. 支社の区分

#### (1) 支店(branch)：

韓国内において収益を生み出す営業活動を行う。

#### (2) 連絡事務所(liaison office)：

韓国内において収益を生み出す営業活動は行わず、業務連絡、市場調査、研究開発など非営業機能のみを遂行し、品質管理、市場調査、広告などの予備・補助的業務を行うことはできるが、直接販売または本社に代わった販売行為を行うために製品の在庫を維持することは認められない。

### 3. 設立申告

#### (1) 原則

指定の取引外国為替銀行に届出を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

#### (2) 財政経済部に対する申告事項(支店及び連絡事務所共通)

- イ. 資金の融資、海外金融の斡旋及び仲介、カード業務、割賦金融など、銀行業務以外の金融関連業務
- ロ. 証券及び保険に関連した業務
- ハ. 外国人投資促進法など、他の法令により許容されない業務
- ニ. 公序良俗を害する恐れのある業務

#### (3) 外国為替銀行に対する許可申請、または申告に必要な提出書類

- イ. 外国企業の韓国支社設置申告書(外国為替取引規定の別紙第7-11号書式)
- ロ. 本社の定款(両者共に本社所在地での公証が必要)
  - 法人：本社の定款
  - 個人企業：公認会計士監査済みの財務諸表
- ハ. 国内支社長の任命状
- ニ. 支社の設置業務を他人に委任する場合は委任状(本社所在地での公証が必要)
- ホ. 本社の登記簿謄本または営業許可書  
(写しを提出する場合、本社所在地での公証が必要)

## 4. 支社の設立登記

### (1) 商法上の概念

- イ. 商法上支社という概念はなく、営業所と規定(商法第614条-第621条)し、営業活動を行う場合には登記が義務づけられている。
- ロ. 外国為替取引規定上、連絡事務所の営業活動は認められず、日常的な情報交換活動などに限定される。従って、連絡事務所は登記手続きは不要で、支店のみ登記手続きが必要である。

### (2) 登記の手続き

- イ. 登記申請者：韓国における代表者が外国会社を代表して登記を申請(非訟事件手続法第228条)
- ロ. 登記期間：営業所設置日から3週間以内
- ハ. 登記事項(商法第614条第2、3項)
  - 韓国において設立される同種あるいは最も類似した会社の支店と同一の事項
  - 会社設立の準拠法
  - 韓国における代表者の氏名、住所
- ニ. 申請書の記載事項
  - 会社の商号：商号はハングルで記載し、商法上の会社の種類(合名・合資・株式・有限会社)を表示
  - 本店：外国本社の所在地
  - 営業所：韓国における営業所の所在地
  - 登記の目的：営業所の設置登記
  - 登記の事由：営業所の設置
  - 登記事項
    - 同種あるいは最も類似した国内会社の登記事項
    - 会社設立の準拠法

- 韓国における代表者の住所、氏名
  - 会社の設立年月日、営業所設置の趣旨とその年月日
  - 必要な許認可証が送達された年月日
  - 登録税額など
  - 申請日付
  - 外国会社の商号、本店、韓国支社の代表者の氏名と住所
  - 代理人による申請の場合には代理人の氏名と住所
  - 登記所の表示
- ホ. 添付書類(非訟事件手続法第229条)
- 本店の存在が認められる書面(会社設立事項の証明書)  
：官庁の証明書または登記簿謄本
  - 韓国における代表者の資格を証する書面  
：株主総会議事録または理事会決議書や当該会社による任命状
  - 会社の定款または会社の性格が識別できる書面  
：外国会社本国の管轄官庁または在韓本国領事の認証を受けたもの
  - 許可書または認可書(必要な場合)
  - 上記の各書面に対する翻訳本及び在外官公署または領事の認証書面
  - 諸税納付領収証及び確認書、登記申請の手数料
  - 代理人の任命状
  - 代表者の印鑑提出：外国人の場合は登記申請の委任状に署名し、その署名に対しては本国の官公庁または公証人の認証を要する。
  - 就任承諾書(代表者)
  - 外国人の住所が確認できる証明書または住所証明
- へ. 登記費用
- 登録税：27,600ウォン(首都圏及び大都市の場合はその3倍)
  - 教育税：登録税の20%
  - 農漁村特別税：減免される登録税の20%
  - 登記申請の手数料：15,000ウォン

## 5. 閉鎖及び清算代金の回収(外国為替取引規定第7-51条)

### (1) 申告

規定により設置許可を得た人が韓国支社の閉鎖あるいは閉鎖後韓国内の保有財産を処分し、外国へ送金しようとする場合には指定の取引外国為替銀行に当該国内支社の管轄税務署長が発給した納税証明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 (2) 回収金額の限度

外国企業の韓国支社への営業資金導入額、利益剰余金及びその他の積立金の合計金額(欠損のある場合は欠損金額を差引いた金額)の範囲内

### (3) 清算代金回収の申請書類

- 申請書(規定別紙第7-14号様式) 1通
  - 申請者を選任した場合は清算人名義による申請が必要
- 申請事由書
- 公認会計士監査済みの清算報告書(閉鎖日及び清算終結日現在の貸借対照表、損益計算書を含む) 1通
- 納税証明書(国税及び地方税) 各1通
- 営業資金導入額、利益剰余金及びその他積立金の明細書 1通
- 預金残高証明書 1通(清算報告書上の送金可能額と一致のこと)
- 営業活動支店の場合、清算終結登記簿謄本 1通
  - 清算終結登記簿謄本が提出できない場合は以下の書類を提出
    - ・ 廃業申告事実証明書 1通(管轄税務署が発給)
    - ・ 清算人選任が立証できる書類
    - ・ 債権催告公告の事実が立証できる書類(新聞広告の写し)
    - ・ 韓国人労働者に対する不払い金品有無の確認書1通(管轄労働事務所長が発給)
- 閉鎖申告書の原本

## 〈別添〉 法人設立及び登記に必要な様式の見本

1. 株式会社設立登記申請書	26
2. 定款	29
3. 株式引受証	35
4. 株式請約書(株式引受契約の申込書)	36
5. 株主名簿	38
6. 創立事項報告書	39
7. 株式払込金保管証明書	41
8. 株式発行事項同意書	42
9. 創立総会期間短縮同意書	43
10. 創立総会議事録	44
11. 調査報告書	46
12. 理事会議事録	47
13. 就任承諾書	49
14. 委任状	50

## 株式会社設立登記申請書

1. 商号：〇〇〇株式会社
2. 本店：〇〇市〇〇区〇〇洞123-4
3. 登記の目的：株式会社の設立登記
4. 登記の事由：発起人が定款を作成し公証人の認証を受けた上で、発行株式は発起人及び募集によって引受けた後、株金を払込み、 年 月 日に創立総会を行いましたので、下記事項の登記を願います。

商号：〇〇〇株式会社

本店：〇〇市〇〇区〇〇洞123-4

- 目的：1.
- 2.
  - 3.
  4. その他、各号に関する付帯事業

会社が発行する株式の総数： 株  
1株の金額：金 ウォン  
会社の設立時に発行する株式の総数： 株  
発行株式の総数、その種類及び各種株式の内容・数：  
記名式の普通株式 株  
資本の総額：金 ウォン  
広告の方法：大韓民国の〇〇〇市から発行される日刊紙の〇〇〇新聞に掲載する。

理事の氏名及び住民登録番号

理事 〇〇〇 ( ー )

理事 〇〇〇 ( ー )

理事 〇〇〇 ( ー )

※ 外国人の場合：△△国人〇〇〇( 年 月 日生)

会社を代表する理事の氏名及び住所

理事 〇〇〇 ( ー )

住所：

監査役の氏名及び住民登録番号

監査役〇〇〇 ( ー )

1. 課税標準額：金 ウォン
2. 登録税：金 ウォン
3. 教育税：金 ウォン
4. 合計：金 ウォン

添付書類

定款	1通
外国人投資申告済証(写し)	1通
株式引受証	1通
株式請約書(株式引受契約の申込書)	1通
株式発行事項同意書	1通
創立総会議事録	1通
理事及び監査役の調査報告書	1通
創立事項報告書	1通
創立総会期間短縮同意書	1通
理事会議事録	1通
就任承諾書	各1通
役員の印鑑証明書及び住民登録謄本	各1通
株金納入保管証明書(株式払込金保管証明書)	1通
登録税及び債権の領収証	1通
印鑑申告書	1通
委任状	1通

上記のとおり登記を申請します。

年 月 日

申請者〇〇〇株式会社

〇〇市 〇〇区 〇〇洞 123-4

代表理事 〇〇〇

〇〇地方裁判所商業登記所 御中

# 定 款

## 第1章 総則

第1条(商号) 当社は〇〇〇株式会社と称する。

第2条(目的) 当社は次の事業を営むことを目的とする。

- 1.
- 2.
- 3.
4. その他、各号に関する付帯事業

第3条(本店の所在地) ①当社は本店を〇〇市内に置く。

②当社は必要に応じて理事会の決議により、国内外に支店、出場所、事務所及び現地法人を置くことができる。

第4条(広告の方法) 当社の広告は、〇〇市内から発行される〇〇〇新聞に掲載する。

## 第2章 株式

第5条(会社が発行する株式の総数) 当社が発行する株式の総数は〇〇〇株とする。

第6条(1株の金額) 当社が発行する株式1株の金額は〇〇〇ウォンとする。

第7条(会社の設立時に発行する株式の総数) 当社は設立に際して〇〇〇株の株式を発行することとする。

第8条(株式及び株券の種類) 当社の株式は普通株で全て記名式とし、株券は〇株券、〇株券、〇株券の〇種類とする。

第9条(株式出資金の払込の遅滞) 株式出資金の払込を遅滞した株主は、払込期日の翌日から払込が済むまで遅滞した株式出資金に対し100ウォン当たり日歩10銭の割合で過怠金を会社に支払い、これにより損害が生じた場合はその損害を賠償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10条(名義書換)** ① 当会社の株式に関して名義書換を請求するには、当会社の定める請求書に記名捺印または署名し、株券ととも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譲渡以外の事由により株式を取得した場合は、当会社の請求による第1項の請求書以外にその事由を証明する書面と株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11条(質権の登録及び信託財産の表示)** 当会社の株式につき質権の登録または信託財産の表示を請求するには、当会社所定の請求書に当事者が記名捺印あるいは署名し、株券ととも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登録または表示の抹消を請求する場合も同様である。

**第12条(株券の再発行)** ① 株券の分割、併合、汚損などの事由により株券の再発行を請求するには、当会社所定の請求書に当事者が記名捺印または署名し、株券ととも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② 株券の喪失によりその再発行を請求するには、当会社所定の請求書に記名捺印または署名し、除権判決の原本または写しととも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13条(手数料)** 第11条ないし第13条の定める事項を請求する人は、当会社所定の手数料を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

**第14条(株主名簿の閉鎖)** ① 当会社は毎年12月31日から定期株主総会の終結日まで株主名簿の記載の変更を停止する。

**第15条(株主の住所などの申告)** 当会社の株主及び登録された質権者、またはその法定代理人や代表者は当会社所定の様式によりその氏名、住所及び印鑑を当会社に届出なければならない。申告事項に変更が生じた場合も同様である。

### 第3章 株主総会

**第16条(招集)** 当会社の定期株主総会は営業年度末日の翌日から3か月以内に招集し、臨時株主総会は必要に応じて随時招集する。

**第17条(議長)** 代表理事が株主総会の議長となる。しかし、代表理事に事情のある場合は理事会で選任した他の理事が議長となる。

**第18条(決議)** 株主総会の決議は、法令または定款に別途の定めがない限り、出席株主議決権の過半数と発行株式総数4分の1以上とする。

**第19条(議決権の代理行使)** 株主は代理人を通じた議決権の行使ができる。代理人が議決権を行使するには票決前にその権限が証明できる書面を議長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20条(総会の議事録)** 株主総会の議事録には議事の経過要領とその結果を記載し、議長と出席した理事が記名捺印または署名しなければならない。

## 第4章 役員及び理事会

**第21条(理事及び監査役の人数)** 当会社の理事及び監査役は各1人以上とする。

**第22条(理事の選任)** 当会社の理事は第18条の決議方法により選任する。

**第23条(監査役の選任)** 当会社の監査役は第18条の決議方法により選任する。しかし、この場合、議決権のない株式を除いた発行株式総数〇分の〇を超過する株式を持つ株主は、その超過する株式に対する議決権が行使できない。

**第24条(理事の任期)** 理事の任期は、就任後〇年とする。しかし理事の任期が最終決算期に関する定期株主総会の終結日前に終了する場合は、その定期株主総会の終結日まで任期を延長する。補欠または増員により選任された理事の任期は、他の理事の残存期間と同一期間とする。

**第25条(監査役の任期)** 監査役の任期は、就任後〇年以内の最終の決算期に関する定期株主総会の終結日までとする。

**第26条(理事会の招集)** 理事会は代表理事または理事会が別途に定めた理事がいる場合にはその理事が会日の〇日前に各理事及び監査役に通知して招集する。しかし、理事及び監査役全員の同意を得た場合には招集の手続き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る。

**第27条(理事会の決議)** 理事会の決議は理事の過半数が出席し、その出席理事の過半数とする。

**第28条(理事会の議事録)** 理事会の議事録には議事の経過要領及びその結果を記載し、

出席理事及び監査役が記名捺印または署名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29条(代表理事)** ① 当社は社長〇名を選任し、必要に応じて専務理事及び常務理事各若干名を選任する。

② 社長、専務理事及び常務理事は、理事会の決議をもって理事の中から選任する。

③ 社長は当会社を代表する。

**第30条(業務執行)** ① 社長は当会社の業務を統括し、専務理事または常務理事は社長を補佐してその業務を分掌する。

② 社長に事情のある場合には、あらかじめ理事会が定めた順序により、専務理事または常務理事が社長の職務を代行する。

**第31条(監査役の職務)** 監査役は当会社の業務及び会計を監査する。

**第32条(報酬及び退職金)** 役員の報酬または退職した役員の退職金は、株主総会の決議をもって決する。

## 第5章 計算

**第33条(営業年度)** 当会社の営業年度は、毎年1月1日から同年12月31日までとする。

**第34条(財務諸表、営業報告書の作成及び備え)** ① 当会社の社長は、定期株主総会の会日6週間前に次の書類及びその付属明細書と営業報告書を作成し、理事会の承認と監査役の監査を受けて定期総会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1. 借対照表
2. 損益計算書
3. 利益金処分計算書または差損金処理計算書

② 第1項の書類は営業報告書、監査報告書とともに、定期株主総会の〇週間前から当会社の本店と支店に備え置かなければならず、総会の承認を得た時は貸借対照表を直ちに公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35条(利益金の処分)** 每期総収入金から総支出金を差引いた残高を利益金とし、それを次のように処分する。

1. 利益準備金の金銭による利益配当額〇分の〇以上
2. 別途の若干の積立金
3. 若干の株主配当金
4. 若干の役員賞与金
5. 若干の後期繰越金

**第36条(利益配当)** 利益配当金は、毎決算期に株主名簿に記載されている株主または質権者に支給する。

## 附 則

**第37条(最初の営業年度)** 当会社の最初の営業年度は 年 月 日までとする。

**第38条(発起人)** 発起人の氏名、住民登録番号及び住所は、この定款の末尾に記載したとおりである。

上記のように〇〇〇株式会社の設立のために、この定款を作成し、発起人全員が次に記名捺印または署名する。

年 月 日

発起人〇〇〇  
( 一 )  
〇〇市〇〇区〇〇洞123-4

発起人〇〇〇  
( 一 )  
〇〇市〇〇区〇〇洞123-5

発起人〇〇〇  
( 一 )  
〇〇市〇〇区〇〇洞123

※ 外国人の場合：発起人△△国人の〇〇〇

( 年 月 日生)

△△国◇◇◇×××123

株式引受証	
商号	〇〇〇株式会社
引受する株式の数	株
総額	金 ウォン
1株の金額	金 ウォン
<p>本人は〇〇〇株式会社の発起人として上記の株式を引き受けます。</p> <p>西暦 年 月 日</p> <p>発起人〇〇〇 〇〇市〇〇区〇〇洞123-4</p> <p>〇〇〇株式会社 御中</p>	

株式請約書	
商 号	〇〇〇株式会社
引き受ける株式の種類及び数	記名式普通株式 株
1株の金額	金 ウォン
株式払込金の総額	金 ウォン
<p>上記会社の定款及び本請約書の記載事項を承諾の上、上記の株式を引き受けることを申し込みます。</p> <p style="text-align: center;">西暦 年 月 日</p> <p style="text-align: center;">株式引受契約の申請者 〇 〇 〇 〇〇市〇〇区〇〇洞123</p> <p>〇〇〇株式会社 御中</p>	
定款の認証年/月/日及び 公証人の氏名	西暦 年 月 日
目 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li> <li>2.</li> <li>3.</li> <li>4. その他、各号に関する付帯事業</li> </ol>

商号	〇〇〇株式会社
本店の所在地	〇〇市〇〇区〇〇洞123
会社が発行する株式の総数	株
1株の金額	金 ウォン
会社の設立に際して発行する株式の種類及び数	記名式普通株式 株
広告の方法	大韓民国の〇〇市から発行される〇〇新聞に掲載する。
発起人の氏名及び住所	<p>発起人〇〇〇 (            ー            ) 〇〇市〇〇区〇〇洞123</p> <p>発起人〇〇〇 (            ー            ) 〇〇市〇〇区〇〇洞1234</p> <p>発起人〇〇〇 (            ー            ) 〇〇市〇〇区〇〇洞1235</p>
各発起人が引き受けた株式の種類及び数	発起人の〇〇〇は△△株、〇〇〇は△△株の記名式普通株式をそれぞれ引き受けた。
株式出資金の払込期日	年 月 日
株式出資金の払込を担当する銀行と払込先	△△銀行〇〇〇支店

## 株 主 名 簿

1株の金額：	ウォン	資本金：	ウォン
1. 〇〇〇			×× 株
2. 〇〇〇			×× 株
3. 〇〇〇			×× 株
4. 〇〇〇			×× 株
		合計	××× 株

上記は当会社の株主名簿に間違いがない。

年 月 日

〇〇〇株式会社

代表理事〇〇〇

## 創立事項報告書

私どもは、〇〇〇株式会社の発起人として創立に関する事項を下記のとおり報告します。

1. 私どもは、事業の目的を

- 1)
- 2)
- 3)
- 4) その、各号関連の付帯事業

と定め、会社が発行する株式の総数は△△△株、設立に際して発行する株式の総数は△△株、そして1株の金額は金△△ウォンであり、資本金△△△ウォンをもって株式会社を設立しようと企画しました。

2. 私どもは、〇〇〇氏を発起人代表として選任し、会社設立までの必要事項について〇〇氏が発起人を代表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3. 発起人全員が集まって 年 月 日定款を作成し、同年 月 日公証人、弁護士により認証を受けました。

4. 発起人たちは 年 月 日、会社の設立に際して発行する総株式数△△株のうち△株を引き受け、残りの△株については株式請約書(株式引受契約の申込証)を作成し、株主の募集に取り掛かりました。

5. 上記の募集に先立ち、発起人全員の同意を得て額面株式1株の金額を金△△ウォンとすることに決議し、 年 月 日まで〇〇〇氏が株式の引受契約を申し込み、会社設立に際して発行する株式総数△△△株の引受が完了しました。

6. 上記の引受株式については 年 月 日、払込を担当する〇〇銀行〇〇支店

に同年 月 日まで払い込むよう通知したところ、同年 月 日までに払込が済み、株式払込金は上記会社の名義で〇〇銀行〇〇支店に別段預金として保管されており、同銀行が発行した株式払込金保管証明書によって払込の事実が確認されます。

7. 会社に現物出資した人は1人もいなく、その他裁判所に検査人の選任を申請する事由(商法第290条に定めた事項)については定款の定めがないため、手続きを踏む必要は全くありません。
8. 以上のように、会社の設立に際して発行する株式総数の引受及び払込が済み、会社の発起人たちは一日も早く会社を設立しようと株式引受人全員の同意を得て招集期間を短縮し、本日創立総会を開催するようになりました。

上記のとおり報告します。

年 月 日

〇〇〇株式会社

発起人 〇〇〇

発起人 〇〇〇

発起人 〇〇〇

〇〇〇株式会社

## 株式払込金保管証明書

金額：金            ウォン (₩            )

上記の金額は、貴社の設立に際して発行された株式△△株(1株の金額：金            ウォン)に対する払込金として、            年    月    日までに払込が済み、現在これを保管していることを証明します。

年    月    日

〇〇〇株式会社 御中

## 株式発行事項同意書

下記の発起人たちは全会一致で、会社の設立に際して発行する株式につき、次のように決定し、同意する。

1. 式の種類及び数

記名式普通株式△△株(額面金額：△△ ウォン)

2. 額面以上の株式を発行する数及び金額

該当事項無し

年 月 日

発起人 ○○○

発起人 ○○○

発起人 ○○○

○○○株式会社 御中

## 創立総会期間短縮同意書

下に記名捺印した私どもは、〇〇〇株式会社の株式引受人として同会社の定款規定により求められる創立総会の招集期間を短縮し、下記のとおり創立総会を開催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また適法に通知された会議と同様、この会議においても議案が処理できることに同意します。

日時： 年 月 日午前(午後) 時

場所：〇〇市〇〇区〇〇洞123

議案：1. 創立事項の報告に関する件

2. 定款の承認に関する件

3. 理事、監査役の選任に関する件

4. 商法第298条所定に定めた事項の調査報告に関する件

5. 本店の設置場所決定に関する件

年 月 日

株式引受人〇〇〇

株式引受人〇〇〇

株式引受人〇〇〇

株式引受人〇〇〇

## 創立総会議事録

下記のとおり創立総会を開催した。

日時： 年 月 日午前 時

場所：〇〇市〇〇区〇〇洞123

引受株式の総数： 株

株式引受人の総数： 名

出席した株式引受人の総数： 名

出席した株式引受人の株式： 株

発起人代表〇〇〇氏は上記のように商法第309条所定の定足数が出席したので、同総会が適法に成立したことを報告し、議事進行の前に臨時議長の選任を求めたところ、出席株式引受人の全会一致で発起人代表〇〇〇氏を臨時議長に選任した。

ここに被選任者は、その場において議長就任を承諾し、議長席につき開会を宣言し、次のように議案に関する審議を求めた。

### 第1号議案：創立事項の報告に関する件

発起人代表〇〇〇氏は発起人を代表し、別紙創立事項に関する報告書のように創立総会までの経過を詳細に説明・報告したところ、出席株式引受人たちの全会一致で承認した。

### 第2号議案：定款の承認に関する件

臨時議長は定款を朗読し説明を付け加えた後、出席株式引受人たちにその適合性と採択のいかんを問い、出席株式引受人たちの全会一致でこれを承認した。

### 第3号議案：理事及び監査役の選任に関する件

臨時議長が理事2人と監査役1人を選任することを求めたところ、出席株式引受人たちの全会一致で下記の者をそれぞれの理事及び監査役に選任した。

理事：〇〇〇

理事：〇〇〇

監査役：〇〇〇

被選任者はその場において就任を承諾した。続いて出席株式引受人たちは、臨時議長の提議により全会一致で理事〇〇〇氏を議長に選任し、被選任者はその場において就任を承諾し、議長席につき会議の進行を続けた。

第4号議案：商法第313条に定めた事項の調査報告に関する件

議長は理事と監査役全員に対し、商法第313条所定の事項を調査し、その結果について報告すべきことを説明したところ、発起人であった理事や監査役はそのような調査に参加しかねる旨を述べ、発起人以外の理事及び監査役に商法第313条所定の事項を調査して報告するよう要請した。かかる要請により、監査役〇〇〇氏が別紙調査報告書のとおり報告した。出席株式引受人たちは、その調査報告書を検討した後、これを全会一致で承認した。

第5号議案：本店の設置場所決定に関する件

議長は、当会社の本店を次の場所に設置する旨を述べ、その場所の適合性に関して問った。ここに出席株式引受人たちは議長提議のとおり、本店を以下の場所に設置することを全会一致で承認した。

本店：〇〇市〇〇区〇〇洞123

以上をもって、本総会の議案全部を終了したので、議長は〇時〇分に閉会を宣する。

これを証明するため、この議事録を作り、議長と出席理事がこれに記名捺印する。

西暦 年 月 日

〇〇〇株式会社

議 長 理事：〇〇〇

理事：〇〇〇

理事：〇〇〇

## 調査報告書

私どもは、 年 月 日に開催された〇〇〇株式会社の創立総会において、会社の理事及び監査役に選任されたので、商法第313条所定の事項について調査し、その結果を下記のとおり報告します。

1. 会社の設立に際し発行する株式総数の引受に関する正確性のいかん

会社が発行する株式の総数は△△株で、会社の設立に際して発行する株式の総数は△△株、1株の金額は△△ウォンであり、その引受の内訳は下記のとおりです。

発起人が引受けた株式数：△△株

西暦 年 月 日引受完了

株式引受契約の申請者が引受けた株式数：△△株

西暦 年 月 日引受完了

2. 引受株式の払込に関する正確性のいかん

会社の設立に際し発行する株式の総数△△株に対し、金△△△ウォンが 年 月 日までに払込済みであることを〇〇銀行〇〇支店発行の株式払込金保管証明書により確認します。

3. 現物出資及びその他の調査事項

会社に現物出資した人は1人もいなく、その他裁判所に検査人の選任を申請する事由(商法第290条所定の事項)についての定款の定めがないため、このような手続きを経る必要は全くありません。

上記のように調査結果を報告します。

年 月 日

検査人：〇〇〇

〇〇〇株式会社 御中

## 理事会議事録

日時：西暦 年 月 日午前 時 分

場所：〇〇市〇〇区〇〇洞123において理事全員の同意があったので、商法第390条第3項により招集手続きを省略し、次の議案を審議するため、理事会を開催する。

理事総数：〇名

出席理事：〇名

監査役総数：〇名

出席監査役：〇名

理事〇〇〇氏が臨時議長に選出される。

第1号議案：代表理事の選任に関する件

議長は定款の規定に基づき代表理事の選任を要求したところ、出席理事全員は慎重な協議を経た後、下記の者を選任する。

代表理事：〇〇〇

第2号議案：本店の設置場所決定に関する件

議長は、当会社の本店を次の場所に設置する旨を述べ、その場所の適合性に関して問った。ここに出席株式引受人たちは議長提議のとおり、本店を以下の場所に設置することを全会一致で承認した。

本店：〇〇市〇〇区〇〇洞123

以上をもって、会議の目的である議案の審議を終えたので、議長は閉会を宣する。

上記の決議を明確にするため、議事録を作り、議長と出席理事がこれに記名捺印する。

西暦 年 月 日

〇〇〇株式会社

議長代表理事：〇〇〇

理 事：〇〇〇

監 査 役：〇〇〇

## 就任承諾書

下に記名捺印した私は、 \_\_\_\_\_ に所在した株式会社

\_\_\_\_\_ の \_\_\_\_\_ 職に就任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年 月 日

氏名：

住所：

株式会社 御中

## 委任状

(受任者)

氏名：

住所：

私は、上記の者を代理人と定め、下記の権限を委任します。

1. 株式会社 \_\_\_\_\_ の設立登記申請
2. 定款、創立総会議事録、理事会議事録、就任承諾書など、登記関連書類の公証に関する一切の行為
3. その他、上記の登記申請に関する一切の行為

公証を受けた同書類は                      から                      まで有効である。

年                      月                      日

(委任者)

氏名：

住所：